

2021년 1월 1일부터



환경부



한국환경공단

등록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※ 석면안전관리법 개정('18.12.25) 및 시행('19.12.25)



감리인 등록 기준

※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42조 제1항 별표 3의2

자격	석면조사기관, 건축사사무소,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해당
인력	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채용(등급에 관계없이 2명 이상)
시설	사무실 보유
장비	음압측정기 등 감리업무를 위한 장비 보유



다음 페이지에서 세부기준을
(체크리스트) 확인하세요

※ 등록신청서 양식 등 세부 매뉴얼은 「석면관리종합정보망」(<http://asbestos.me.go.kr>)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.

등록유예 기간

※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규정에 따른 감리인은 등록없이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.

기간별 감리업무 수행가능여부(예시)

예시1	감리인 지정신고를 2020.12.25.~2020.12.31.로 신고한 경우 → 등록없이 감리업무 수행가능(단, 석면공사가 '21.1.1 이후로 연기될 경우 감리업무 수행불가)
예시2	감리인 지정신고를 2020.12.28.~2021.1.3.으로 신고한 경우 → 2020.12.28.~12.31.은 감리인 등록하지 않아도 수행 가능, 2021.1.1.~1.3.은 감리인 등록을 해야 수행 가능
예시3	감리인 지정신고를 2021.1.1.~2021.1.8.으로 신고한 경우 → 등록된 감리인만 감리업무 수행가능

변경 등록

- 상호, 영업소 소재지, 대표자, 소속 감리원 중 어느 하나 변경시 시·도지사에게 변경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- 제출서류 ① 변경등록신청서(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3서식), ② 변경사실 증빙서류, ③ 감리인 등록증
- ※ 변경 등록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* 등록증 대여는 금지이며(대여시 등록 취소), 업무 폐지 또는 등록 취소시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.

감리인 평가

※ 세부 평가기준은 2020년 하반기에 공지 예정입니다.

평가항목	△ 기술인력 및 시설·장비 보유 현황, △ 감리업무 수행체계,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관련 업무수행 체계, △ 감리실적, 행정처분이력 등 업무수행 성과
평가방법	서면조사 및 방문조사(평가기관: 한국환경공단)
이의신청	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서면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, 환경부장관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
결과 공개	평가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 ※ 평가 등급이 미흡한 감리인은 시정명령 및 영업 정지 등

문의처: 관할 시·도 환경과

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기준(체크리스트)

1 자격

자격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체크

자격유형	제출서류	☒ ☐
1.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사업자등록증	☐
2.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	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	☐
3.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	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	☐
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·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·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	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	☐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	측정대행업 등록증 (실내공기질)	☐
6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	석면환경센터 지정서	☐
7.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	비영리 법인설립허가증	☐

2 인력

각 감리원 자격기준 및 감리원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아래 항목 모두 체크

제출서류	비고	☒ ☐
교육이수증 (신규/보수)	- 신규교육 수료증 및 가장 최근에 이수한 보수교육 수료증 ※ 보수교육 - 감리원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매3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이수 - 단, '12·'13년 신규교육 수료자는 '19년까지, '14·'15년 신규교육 수료자는 '20년까지, '16~'18.6.30 신규교육 수료자는 '21년까지 보수교육 이수	☐
신분증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증 등	☐
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	- 고용보험 필수 ※ 고용보험 생략가능한 경우(사실증명서류 반드시 첨부) - 감리인의 대표 또는 임원(이사, 감사 등)인 감리원 - 부부가 감리인을 운영하는 경우⇒ 가족관계증명서 첨부	☐
재직증명서		☐

3 시설

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출서류	☒ ☐
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그 밖의 증명 서류(건축물대장, 사업장등록증 등)	☐

4 장비

장비종류 및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출서류	비고	☒ ☐
장비명세서	- 품명, 규격, 안전인증정보, 수량 등 작성 ※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	☐

- 장비종류별 보유기준

장비종류별 보유기준 종류	최소규격	수량	☒ ☐
1)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	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- 고효율 필터(HEPA)가 장착된 것	고급감리원 수 이상	☐
2) 방진마스크(특등급)			☐
3) 음압측정기	- 측정감도 0.01mmH₂O 이하일 것 (단, mmHg, Pa 등 기타의 압력단위로 표기 되는 장비도 허용) -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(Zero point)을 교정 기능 - 기록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	감리원 수 이상	☐
4) 두께측정기	0.01mm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것		☐
5)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	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(환경부고시 제2017-267호) [별표3]의 규격		☐
6) ① 고글형 보호안경			☐
② 안전화	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신고 대상품		☐
③ 안전모			☐
7) ① 방진마스크 필터	안전인증 대상품	감리원 1명당 30개 이상	☐
② 보호복			☐
③ 보호장갑			☐
④ 보호덧신			☐